#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8월 16일

○ 회 부 일 : 2018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금 여성기업 지원 시책 심의시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9조제4항)

##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다. 관계법령발췌서 (붙임3)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안산시청 / 의회사무국 / 이창례 / 2018-10-01 08:58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8. 4. 3. ~ 2018. 4. 23.(20일간)

마. 기타참고사항

-현행조례 (붙임4)

-방침결정문 (붙임 5)

-타시군조례 (붙임 6)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인력·정보·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 제반 경영환경에서 아직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여성 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충분하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행 / 의회사무국 / 이행례 / 2018-10-01 08:58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6호

○ 제 출 자 : 나정숙 의원 외11명

○ 제 출 일 : 2018년 8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지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기준 신설 (안 별표)

(※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 4. 참고사항

가. 조 례 안(붙임1)

나. 관계법령(붙임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의2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안산시청 / 의회사무국 / 이함례 / 2018-10-01 08:59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예고기간 : 2018. 8. 10. ~ 2018. 8. 16.(5일간)

마. 기타참고사항 : 부서검토의견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2018. 2. 28. 전부개정 하였으나,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제7조 제3항에서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로 되어있는 바,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청 / 의회사무국 / 이활례 / 2018-10-01 08:59

#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10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8월 16일

○ 회 부 일 : 2018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보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문 정비

○ 시립어린이집 다수 확충 및 정보접근성 용이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조항 삭제

○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문 정비

## 3.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현행 '3년'을 '5년 이내'로 정비 (안 제16조)

나.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항 중 후단 내용 삭제 (안 제20조)

다. 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삭제 (안 제21조 및 별표 1)

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관련 단서조항 정비 (안 제23조)

##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1)



안산시청 / 의회사무국 / 이철례 / 2018-10-01 08:59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다. 관계법령발췌서 (붙임3)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8. 6. 27. ~ 2018. 7. 17.(20일간)
마. 기타참고사항
-현행조례 (붙임4)
-조례개정 방침결정문 (붙임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사업실적 등(붙임 6)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검토

•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였음.

**□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17. 3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관련**

| 제 목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적용시기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다.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3)<br>○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다.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3)<br>○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위탁 기한을 3년→5년으로 변경(국공립 위탁관련 변경사항 준용) | ▪ '17.3.1. |

•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립



안산시청 / 의회사무국 / 이화례 / 2018-10-01 08:59

어린이집 설치·운영 조항을 정비하였음.

• **안 제21조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또는 육아종합포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음.

• **안 제23조 제3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조정하였음.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명칭·위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종료일이 학기 중 일 때에는 전 학년도의 종료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청 / 의회사무국 / 이창례 / 2018-10-01 08:59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8-3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8월 16일

○ 회 부 일 : 2018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가. 안산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수탁자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2018. 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나.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학교 또는 의료법인,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위탁기간 : 2019. 1.1. ~ 2020. 12.31.(2년간)

○ 장　　소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상록수보건소 3층)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인력 : 9명(비상근 센터장 1, 팀장 1, 팀원 7)

○ 운영예산 : 500,000천원(2018년 기준/ 국비 50%, 시비 50%)

나. 주요 위탁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

○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속치료율 향상

○ 센터 방문자 기초건강검진(키, 체중, 혈압, 혈당 등)

○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순회교육, 캠페인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5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인력과 경험,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1

○ 재위탁 운영기관 선정계획 : 붙임2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안산시의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6년 8월 동의 받은 안건이나 만성질환자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임

○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고혈압 ·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학교 법인 또는 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8-4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8월 16일

○ 회 부 일 : 2018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가. 안산시의 자살률감소와 자살예방 대책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수탁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계약이 2018. 12월 종료됨에 따라

나.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장　　소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5, 상록수보건소 3층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인력 : 10명 (센터장 1, 팀장 2, 직원 7)

○ 운영예산 : 591,105천원(2018년도)

※ 국비15,000　도비 89,300　시비 486,805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사업일체

- 지역사회 자살예방네트워크 활성화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사업
-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 노인자살예방사업
- 기타 안산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 안산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 등 안산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붙 임 : 1. 관계법령 발췌서
2. 안산시 자살 사망률
3. 안산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 예방센터의 설치)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안산시자살예방센터'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은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활성화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 등 안산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